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6511

발의연월일: 2024. 12. 16.

발 의 자:이해식・박상혁・서영교

한병도 • 서영석 • 박정현

염태영 · 천준호 · 정을호

황명선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경찰의 사무를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로 구분하고, 자치경찰사무 중 지역 내 주민의 생활안전 활동에 관한 사무, 지역 내 교통활동에 관한 사무,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 교통 및 안 전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및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 준에 따라 시·도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실질적으로 기초자치단체나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자치경찰 사무에 관계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치경찰의 사무에 관한 사항을 기초자치단체나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의견 수렴 없이 시·도조례로 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여러 광역·기초자치단체에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주요 정책 협의 및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을 위하여 지역치안협의회가 구성 되어 운영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자치경찰 사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및 범위에 관하여 시·도조례로 정하는 경우에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 및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현재 운영 중인 지역치안협의회의 설치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 치안제도 확립과 주민의 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 후단 및 제27조의2 신설).

법률 제 호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및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4장에 제2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2(지역치안협의회의 설치 등) ①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주요 정책 협의 및 공동 협력을 위하여 시·도 또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에 지역치안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지역치안협의회의 조직·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 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경찰의 사무) ① (생 략)	제4조(경찰의 사무)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제2호가목부터 다목까	②		
지의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구			
체적인 사항 및 범위 등은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			
라 시·도조례로 정한다. <후	<u>이 경</u>		
<u>단 신설></u>	<u>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u>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및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의견		
	<u>을 들어야 한다.</u>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u><신 설></u>	제27조의2(지역치안협의회의 설		
	치 등) ① 지역사회 안전을 위		
	한 주요 정책 협의 및 공동 협		
	력을 위하여 시·도 또는 시·		
	<u>군・구(자치구를 말한다)에 지</u>		
	역치안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지역치안협의회의 조직・구		
	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u> 정한다.</u>		